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200536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C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기정, 전수림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649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별지2 기재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이다.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전기, 전자, 통신기기, 기구 및 관련 부품의 개발,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8. 8. 20. A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 D은행, 신용보증한도액 729,000,000원, 보증기간 2018. 8. 21.부터 2019. 8. 20.까지인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8. 8. 21. D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A는 2018. 8. 22. D은행으로부터 8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건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D은행은 2019. 5. 9. 원고에게 A의 2019. 4. 23.자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8. 22. D은행에 대출원리금 737,818,180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보전비용으로 3,496,130원을 지출하였다.

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B은 2018. 12.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9. 4. 16.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임의경매 및 배당 등

-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Q, R(중복)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1. 4. 29. 최진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 경매법원은 2021. 6.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3) 원고는 2021. 6. 15.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배당금 반환(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1카합20064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1. 6. 29.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 200,000,000원과 그 부대채권(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한 처분 및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다 제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와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B이 운영하는 A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노래반주기를 주문받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A에 전자부품을 공급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고는 B의 요청으로 A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5. 7. 24.경 9,500,000원, 2015. 7. 27.경 10,500,000원, 2015. 9. 25.경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8. 9. 10.경에도 B의 요청으로 A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선이자 2,416,440원(이자율 연 18%)을 공제한 137,583,560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운영자금 융통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4) 이에 따라 B은 2018.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향후 추가로 차용할 금원을 포함한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4. 25., 이자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이의 없이 수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9. 4.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A와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B과의 연대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다 제8, 1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와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A의 재정상태, 거래현황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 지난 2018. 12. 31.에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9. 4. 23.경 발생하였다.

② A는 십수년간 약 10,000,000,000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렸던 노래반주기 제조판매업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8년을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이 1,949,445,988원, 당기순이익이 393,896,508원에 달하였다.

③ 특히 A는 G은행 마곡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8. 12. 31.경 200,000,000원, 2019. 3. 28.경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각 대출 당시 A의 신용등급은 BBB(양호한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제한적인 수준)로 평가되었고, 국내 신용조사 대상 기업 중 BB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8% 정도에 불과하며, 2016, 2017년의 경우 BB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부도율은 0.06%에 불과하였다.

④ 위 각 대출 당시 G은행 마곡지점장이던 F는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곡지점이 취급한 신용등급 중 'BBB'는 거의 제일 좋은 등급이고, 이와 같은 A의 신용등급 외에 당시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A의 신용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위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 A는 2017년도에는 총 33명 가량의 직원을, 2018년도에는 총 32명 가량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사업장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2017. 1.부터 2019. 2.경까지 법인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등도 모두 납부하여 왔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2019. 4.경

이전까지는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없었다.

⑥ 그러던 중 A는 2019. 4.경 D은행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기 연장을 거부당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 갑자기 심각한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었고, 설상가상 2019. 11. 19. 사업장에 화재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2020. 6. 30.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설령 이 사건에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다 제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의 요청으로 A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B은 이 사건 대여금 및 향후 추가로 차용할 금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8.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S 증서 2018년 제908호)를 작성하여 준 점, ② A는 종전에 피고로부터 금원을 몇 차례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도 신용등급 BBB, 연매출 약 10,000,000,000원 상당의 업체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 및 B의 재정상태 내지 변제능력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2019. 3. 25. A에 17,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와 B은 노래반주기 전자부품 거래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일 뿐 별다른 인적 관계는 없어 보이고, 피고로서는 A나 B의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사해행위취소 청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박성윤, 판사 김유경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아파트 N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O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제2층 P호 84.51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 노원구 L 대 11408.5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1408.5분의 41.616 끝.

별지2

채권의 표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Q, R(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21. 6. 8.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 200,000,000원과 그 부
대채권

